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 일본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 | 국가 귀속 세수를 지방 자체재원으로 - 프랑스 파리의 공실 주택세(TVLH) 개혁 사례

독일 | 독일 지방재정 위기와 자체세입 권한의 한계

미국 | 매사추세츠(MA)주 Fair Share Amendment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지방 자체세입 제도: 권한 위임, 재정위기 대응, 징수체계 통합을 중심으로

한국 |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의 함의

한국 | 자체세입 확보 수단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과 기능





독일 지방재정 위기와 자체세입 권한의 한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구조

- ▶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가 영업세(Gewerbesteuer)와 부동산세(Grundsteuer)의 징수율(Hebesatz)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비교적 강한 국가로 평가됨
 - » 독일 「기본법」은 게마인데의 자기책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보장에는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경제력과 관련된 세원에 대해 게마인데가 징수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
- ▶ 「기본법」 제106조 제6항은 부동산세와 영업세의 수입이 게마인데에 귀속되며, 게마인데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두 세목의 징수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¹⁾
 - » 부동산세와 영업세는 연방법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해지지만, 실제 납부액을 좌우하는 두 세목의 징수율은 개별 게마인데가 결정함
 - » 「영업세법」 제16조와 「부동산세법」 제25조도 각각 영업세와 부동산세의 징수율 결정권을 게마인데에 부여하고 있음²⁾
- ▶ 이 구조에서 독일 지방세 자율성은 “새로운 세목을 자유롭게 만드는 권한”이라기보다 “핵심 세목의 세율 수준을 지역이 조정하는 권한”에 가까운데, 지역소비세나 지역부담형 조세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법의 허용 범위, 감독기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임
- ▶ 한편, 독일 게마인데의 재원은 지방세, 공동세 배분, 보조금 및 재정조정재원으로 구성되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체세입의 핵심은 영업세와 부동산세임
 - » 영업세와 부동산세가 핵심 세원이라는 점은 주별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바, 2024년 도시주(Stadtstaaten)³⁾를 제외한 일반 주(Flächenländer) 기준으로 영업세 순수입은 게마인데 지방세 순수입의 47.0%, 부동산세 A+B⁴⁾는 11.0%를 차지했고, 두 세목의 합계는 58.0%였음

1)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106 Abs6.

2) Gewerbesteuergesetz(GewStG), § 16 및 Grundsteuergesetz(GrStG), § 25

3) 독일의 16개 연방주 중 도시주(Stadtstaaten)는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을 말함. 이들은 하나의 도시가 주(Land) 기능과 게마인데(Gemeinde)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일반 주(Flächenländer) 소속 게마인데와 재정구조가 다름. 따라서 주별 게마인데 세입 비중 비교에서는 도시주를 제외함

4) 독일 부동산세 A(Grundsteuer A)는 농림업용 자산(Betriebe der Land- und Forstwirtschaft)에, 부동산세 B(Grundsteuer B)는 이에 속하지 않는 일반 부동산(Grundvermögen)에 적용됨

≫ 운영예산 세입(Verwaltungshaushalt) 기준으로 보아도 2024년 일반주 전체에서 영업세 순수입은 19.7%, 부동산세는 4.6%로 나타났다

[표 1. 2024년 주별 게마인데 지방세 순수입 중 영업세·부동산세 비중(도시주 제외)]

(단위:%)

구분	BW	BY	BB	HE	MV	NI	NW	RP	SL	SN	ST	SH	TH	계
영업세 순수입 비중	46.8	46.6	43.8	50.8	44.6	45.3	47.8	45.2	43.8	49.2	46.6	44.6	45.2	47.0
부동산세 A+B 비중	9.5	7.9	9.8	10.7	12.3	13.5	13.0	12.4	13.0	11.1	12.1	11.3	11.8	11.0
두 세목 합계	56.3	54.5	53.5	61.5	56.8	58.8	60.7	57.6	56.8	60.3	58.7	55.9	57.0	58.0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6)의 "Einnahmen der Kommunen aus Steuern (netto)" 및 "Einnahmen aus Gewerbesteuer (netto)", Statistisches Bundesamt(2025b)의 Tabelle 71231-01을 바탕으로 작성

주: BW=바덴-뷔르템베르크, BY=바이에른, BB=브란덴부르크, HE=헤센, MV=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NI=니더작센, N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RP=라인란트-팔츠, SL=자를란트, SN=작센, ST=작센-안할트, SH=슐레스비히-홀슈타인, TH=튀링겐

2025년 독일 지방재정 위기의 현황

▶ 2025년에 나타난 독일 지방재정 위기의 핵심은 세입도 늘었지만 세출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점임

≫ 연방통계청의 2026년 4월 발표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2025년 게마인데와 게마인데연합(Gemeindeverbände, 도시주 제외)의 세입은 3,914억 유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나, 세출은 4,233억 유로로 5.6% 증가했음

≫ 그 결과 재정적자는 1990년 통일 이후 최대 규모인 319억 유로로 확대되었고, 이는 2024년의 기존 최대 적자보다 71억 유로 더 큰 규모에 해당함⁵⁾

[표 2. 독일 지방재정 주요 지표(2025년)]

구분	세입	세출	재정수지	인건비	사회급여 지출	물적 투자	순 조세수입	영업세 순수입	부동산세 수입
2025년 규모	3,914억 유로	4,233억 유로	-319억 유로	1,134억 유로	900억 유로	539억 유로	1,365억 유로	628억 유로	145억 유로
전년 대비	+4.1%	+5.6%	적자 71억 유로 확대	+6.8%	+5.9%	+3.5%	+3.4%	+1.0%	전년과 동일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2026a)를 바탕으로 작성

▶ 이와 같은 지출 증가 압력은 인건비와 사회급여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

≫ 2025년 인건비는 1,134억 유로로 6.8% 증가했고, 사회급여 지출은 900억 유로로 5.9% 증가했음

≫ 특히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과 아동·청소년 지원이 빠르게 증가했음⁶⁾

5) Statistisches Bundesamt(2026a), Pressemitteilung Nr114 vom 1April 2026.

6) Statistisches Bundesamt(2026a), Pressemitteilung Nr114 vom 1April 2026.

- ▶ 반면 자체세입은 지출 증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음
 - » 2025년 순 조세수입은 3.4% 증가했지만 영업세 순수입은 1.0% 증가에 그쳤고, 2025년 상반기에도 영업세 순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머물렀음.⁷⁾
 - » 「KfW Kommunalpanel 2025」가 지방자치단체 투자적체를 2,157억 유로로 추정한 점을 고려하면, 재정위기는 단순한 회계상 적자를 넘어 생활기반시설의 유지와 갱신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 이러한 2025년 독일 지방재정 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권한이 재정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자체세입 확대 사례 (1): 부동산세 개혁과 징수율 조정

- ▶ 2025년 독일 부동산세 개혁은 자체세입 확대 수단이라기보다 과세기준 현실화와 세부담 재배분의 성격이 강함
 - » 해당 부동산세 개혁은 1964년(구 서독) 및 1935년(구 동독) 기준의 노후화된 부동산 평가액을 현실화 하기 위해 전국 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전면 재산정한 것임
 - » 연방재무부는 이 같은 재평가로 인해 게마인데의 부동산세 수입이 변동할 경우, 개별 게마인데가 징수율을 조정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함⁸⁾
- ▶ 이러한 2025년 개혁을 앞두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각 시와 게마인데의 수입중립적 징수율 (aufkommensneutrale Hebesätze)을 공개하였음⁹⁾
 - » 이는 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세수중립(revenue neutrality)’과 ‘부담중립(burden neutrality)’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동산세 수입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개별 부동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납세자별 세부담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임
- ▶ 다만, 부동산세는 안정적 세원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음
 - » 2025년 전체 게마인데의 부동산세 수입은 145억 유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도 개편의 목적 또한 세수 확대보다는 과세기준 현실화에 있었음
 - » 또한 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체감도가 높고 주거비 및 상가 임대료 부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방 정부가 징수율을 인상할 경우 정치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7) Statistisches Bundesamt(2026a), Pressemitteilung Nr114 vom 1April 2026, Statistisches Bundesamt(2025a), Pressemitteilung Nr358 vom 1Oktober 2025.

8)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4), “Fragen und Antworten zur neuen Grundsteuer”.

9) Finanzverwaltung Nordrhein-Westfalen(2024), “Aufkommensneutrale Hebesätze”.

자체세입 확대 사례 (2): 프라이부르크의 소규모 자체세입 패키지

▶ 프라이부르크(Freiburg im Breisgau)는 최근 자체세입 확대를 하나의 대형 세목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소규모 수단을 결합하여 추진한 사례임

≫ 2025~2026년 예산 조정 과정에서 <표 3>과 같이 제2주택세, 포장세, 전동킥보드 업체 부과금, 버스 주차요금, 거주자 주차구역 확대 등 여러 세입확충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음¹⁰⁾

[표 3. 프라이부르크의 자체세입 확대 수단(2025/2026년 예산 논의)]

구분	제2주택세 인상	포장세 도입	전동킥보드 업체 부과금	버스 주차요금	거주자 주차 구역 확대	일회용플라스틱기금 환급
내용	15%에서 20%로 인상	2026년부터 일회용 포장·식기·수저 등에 부과	공공공간 이용에 따른 업체 부과	관광버스 주차 공간 유료화	주차공간 관리와 수입 확대	연방법에 따른 청소비용 환급 신청
예산 세입 또는 효과	약 30만 유로 추가수입	약 220만 유로	약 6만 유로	약 15만 유로	약 15만 유로	연간 약 120.8만 유로

출처: Stadt Freiburg(2025a)를 바탕으로 작성

▶ 프라이부르크 사례의 핵심은 개별 세입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비용 부담을 세입과 연계 하였다는 점임

≫ 예를 들어 포장세는 약 220만 유로, 제2주택세 인상은 약 30만 유로의 세입 효과가 예상되었음

≫ 이러한 수단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특정 외부효과나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와 세입 부담을 연결함으로써 정책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프라이부르크의 포장세는 환경정책과 세입확대를 결합한 대표적 사례임

≫ 2026년부터 일회용 음료포장, 일회용 식기 및 음식포장에는 각각 0.50유로, 일회용 수저·빨대 등에는 0.20유로가 부과될 예정임¹¹⁾

≫ 따라서 해당 세목은 단순한 재정확충 수단이라기보다 일회용 폐기물 감축과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함

10) Stadt Freiburg(2025a), "In letzter Runde beschlossen: Änderungen zum Doppelhaushalt 2025/2026"

11) Stadt Freiburg(2025b), "Verpackungssteuer"

자체세입 확대 사례 (3): 콘스탄츠와 튀빙겐의 포장세 확산

- ▶ 포장세는 튀빙겐(Tübingen)과 콘스탄츠(Konstanz)를 통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음
 - » 튀빙겐은 2022년부터 포장세를 도입하였고, 2025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튀빙겐 포장세에 대한 헌법 소원을 기각하면서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음¹²⁾
 - » 콘스탄츠는 2025년 1월 포장세 도입 이후 공공공간 쓰레기 중량이 약 5% 감소했다고 설명함¹³⁾
- ▶ 포장세의 시사점은 지방재정 적자 해결보다 지역문제 대응형 세입수단의 가능성에 있음
 - » 독일도시연합(Deutscher Städtetag)도 포장세를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도, 약 300억 유로 규모의 지방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음¹⁴⁾

자체세입 확대 사례 (4): 뮌헨 숙박세 도입 시도와 주정부의 제도적 제약

- ▶ 뮌헨(München)은 숙박세(Übernachtungssteuer) 도입을 통해 상당한 자체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바이에른주의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 못함
 - » 뮌헨시는 숙박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1억 유로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¹⁵⁾
- ▶ 그러나 바이에른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숙박세 부과를 법률에 따라 금지하였으며, 바이에른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14일 판결에서 해당 규정이 지방재정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¹⁶⁾
 -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세 및 부동산세의 징수율(Hebesatz)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지방세의 도입 여부는 여전히 주정부의 입법권과 사법적 판단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따라서 독일 지방세 체계는 기존 세목의 세율 조정에는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세목 신설에는 상당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함

12) Universitätsstadt Tübingen(2025a), "Verpackungssteuer"

13) Stadt Konstanz(2026), "Verpackungssteuer"

14) Deutscher Städtetag(2026), "Gutes Instrument gegen Vermüllung der Städte", 5Januar 2026

15) Landeshauptstadt München(2025), "Übernachtungssteuer: Stadt München zu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hofs", 21November 2025

16) Bayerischer Verfassungsgerichtshof(2025), Entscheidung vom 14November 2025, Vf3-VII-23

자체세입 확대 사례 (5): 도르트문트의 재정위기와 현실적 한계

- ▶ 도르트문트(Dortmund)는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율권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통해 재정위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 도르트문트시는 2025년 결산 전망에서 약 3억 5,270만 유로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건설업 부진으로 영업세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음¹⁷⁾
- ▶ 도르트문트는 예산균형 달성을 위해 세입확대뿐 아니라 준비금 활용, 전 부문 지출삭감, 도시 자회사 DSW21의 배당금 수입 확보 등 복합적으로 재정대응 수단을 병행하였음
 - ≫ 또한 2025년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차등 징수율을 적용하였으나, 전체 부동산세 B(Grundsteuer B) 수입은 수입중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하였음
 - ≫ 이후 2026년에는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차등 징수율 체계를 폐지하고 다시 단일 징수율 체계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음¹⁸⁾

자체세입 확대 수단의 비교

- ▶ 독일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활용하거나 시도한 자체세입 확대 수단은 <표 4>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표 4. 독일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확대 수단의 특징]

구분	핵심 지방세 조정	지역문제 대응형 지방세	세외수입 확대	재정위기 보완수단
대표 사례	부동산세, 영업세 징수율	포장세, 제2주택세, 숙박세	주차요금, 사용료, 기금환급	준비금, 지출삭감, 자회사 배당
주요 도입 (시도) 지역	NRW주, 도르트문트시 등	튀빙겐, 콘스탄츠, 프라이부르크, 뮌헨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장점	세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정책목표와 세입을 연결하기 쉬움	특정 서비스 비용과 연결 가능	단기 균형 유지 가능
한계	조세저항, 지역경제 영향, 경기민감성	세입 규모 제한, 법적·행정적 부담	형평성 논란, 주민부담, 낮은 세입 규모	구조적 해결책 아님

출처: 저자 작성

- ▶ 핵심 지방세 조정은 세입 규모가 크지만 조세저항과 경기민감성의 한계가 있고, 포장세·숙박세·제2주택세 같은 지역문제 대응형 세입수단은 정책목표와 세입을 연결하기 쉽지만 규모가 작거나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 또한 도르트문트 사례에서 나타나듯 준비금 활용이나 공공기관 배당수입 확보는 단기적인 재정균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재정확충 수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17) Stadt Dortmund(2026), "Schwache Konjunktur belastet Haushalt: Dortmund schließt 2025 mit deutlichem Minus ab", 13Mai 2026

18) Stadt Dortmund(2025), "Haushalt 2025/2026"; Stadt Dortmund(2025), "Was sich 2026 alles ändert: Vom Führerschein bis zur Grundsteuer"

시사점

- ▶ 첫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지방세 확충이 아니라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법정·의무지출 증가, 지역 간 세원 격차를 함께 조정하는 데 있음
 - » 대표적으로 2026년 당초 예산 순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149.6조 원인 반면, 이전수입은 164.1조 원으로 자체수입보다 약 10%가 많은 수준임.¹⁹⁾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문제가 단순한 세입 부족이 아니라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 구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줌
 - »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영업세와 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조정권이 강하지만, 2025년에는 경기침체와 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적자를 기록하였음
 - » 이는 자체세입 권한이 강해도 지출책임과 재원책임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냄
- ▶ 둘째, 지방세 신설권은 상위법 체계와 함께 설계되어야 함
 - » 뮌헨의 숙박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주정부의 입법과 사법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 도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식 지역문제 대응형 세입수단을 논의할 때에는 지방세 신설권의 법적 한계를 먼저 전제해야 함
 - »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만으로 새로운 지방세목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법률상 위임된 탄력세율 활용, 기존 법정세목의 범위 내 조정,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수단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셋째,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세수중립과 부담중립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입중립적 징수율 공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세수 규모와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 변화를 구분하여 설명한 사례임
 -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부담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재정효과와 분배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 우리나라에서도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상한 등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수와 개별 납세자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음
- ▶ 넷째, 지역문제 대응형 소규모 세입수단은 재정위기 해결책이 아니라 비용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함
 - » 프라이부르크와 콘스탄츠의 포장세, 주차요금 조정, 제2주택세 인상은 지역별 외부효과와 세입을 연결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결할 만큼의 규모는 아님

19) 지방재정365,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2026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등과 보조금의 합계로 산정.

▶ 독일 사례는 자체세입 권한의 중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

≫ 영업세와 부동산세는 독일 게마인데 지방세 순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며, 징수율 결정권은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그러나 영업세는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부동산세는 안정적이지만 정치적 수용성과 부담 조정의 한계를 가짐

▶ 2025년 독일 지방재정의 사상 최대 적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세입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개편에서도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조정, 국고보조사업 개선, 법정지출의 재원책임 조정, 주민에 대한 투명한 조세 설명이 함께 도모되어야 함

참고문헌

- ▶ 지방재정365, 「자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https://www.lofin365.go.kr/portal/LF5110000.do>
- ▶ Bayerischer Verfassungsgerichtshof(2025). Entscheidung vom 14. November 2025, Vf. 3-VII-23. “Verbot der Erhebung einer Übernachtungssteuer in Bayern verletzt nicht die kommunale Finanzhoheit.”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5-N-31757>
-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4). “Fragen und Antworten zur neuen Grundsteue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faq-die-neue-grundsteuer.html>
-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6). “Kommunalfinanzen” 및 “Eckdaten zur Entwicklung und Struktur der Kommunalfinanzen 2016 bis 2025.” 11. Mai 20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anzen/Foederale_Finanzbeziehungen/Kommunalfinanzen/kommunalfinanzen.html
- ▶ Deutscher Städtetag(2026). “Gutes Instrument gegen Vermüllung der Städte.” 5. Januar 2026. <https://www.staedtetag.de/presse/pressemeldungen/2025/verpackungssteuer-gutes-instrument-gegen-vermuellung-der-staedte>
- ▶ Finanzverwaltung Nordrhein-Westfalen(2024). “Aufkommensneutrale Hebesätze.” <https://www.finanzverwaltung.nrw.de/aufkommensneutrale-hebesaetze>
- ▶ Gewerbesteuergezetz(GewStG), § 16 Hebesa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wstg/__16.html
- ▶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28, Art. 106.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
- ▶ Grundsteuergesetz(GrStG), § 25 Festsetzung des Hebesatzes. https://www.gesetze-im-internet.de/grstg_1973/__25.html
- ▶ KfW Research(2025). “KfW-Kommunalpanel 2025.” <https://www.kfw.de/%C3%9Cber-die-KfW/KfW-Research/KfW-Kommunalpanel.html>
- ▶ Landeshauptstadt München(2025). “Übernachtungssteuer: Stadt München zu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hofs.” 21. November 2025. <https://ru.muenchen.de/2025/223/Uebernachtungssteuer-Stadt-Muenchen-zur-Entscheidung-des-Verfassungsgerichtshofs-121511>
- ▶ Ministerium für Finanzen Baden-Württemberg(2025). “Grundsteuer-Glossar.” <https://fm.baden-wuerttemberg.de/de/steuern/grundsteuer/grundsteuer-glossar/>

- ▶ Stadt Dortmund(2025). “Haushalt 2025/2026.” <https://www.dortmund.de/rathaus-und-verwaltung/lokalpolitik/haushalt/haushaltsplaene/haushalt-2025-2026/>
- ▶ Stadt Dortmund(2025). “Was sich 2026 alles ändert: Vom Führerschein bis zur Grundsteuer.” <https://www.dortmund.de/newsroom/presse-mitteilungen/was-sich-2026-alles-aendert-vom-fuehrerschein-bis-zur-grundsteuer.html>
- ▶ Stadt Dortmund(2026). “Schwache Konjunktur belastet Haushalt: Dortmund schließt 2025 mit deutlichem Minus ab.” 13. Mai 2026. <https://www.dortmund.de/newsroom/nachrichten-dortmund.de/schwache-konjunktur-belastet-haushalt-dortmund-schliesst-2025-mit-deutlichem-minus-ab.html>
- ▶ Stadt Freiburg(2025a). “In letzter Runde beschlossen: Änderungen zum Doppelhaushalt 2025/2026.” <https://www.freiburg.de/pb/1080438.html>
- ▶ Stadt Freiburg(2025b). “Verpackungssteuer.” https://www.freiburg.de/pb/%2CLen_US/-/205332/verpackungssteuer/vbid6026361
- ▶ Stadt Konstanz(2026). “Verpackungssteuer.” <https://www.konstanz.de/verpackungssteuer>
- ▶ Statistisches Bundesamt(2025a). “Kommunales Finanzierungsdefizit im 1. Halbjahr 2025 bei 19,7 Milliarden Euro.” Pressemitteilung Nr. 358 vom 1. Oktober 20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10/PD25_358_71137.html
- ▶ Statistisches Bundesamt(2025b). “Statistischer Bericht – Realsteuervergleich 2024.”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Steuern/Steuereinnahmen/_inhalt.html
- ▶ Statistisches Bundesamt(2026a). “Kommunen verzeichnen im Jahr 2025 neues Rekorddefizit von 31,9 Milliarden Euro.” Pressemitteilung Nr. 114 vom 1. April 202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6/04/PD26_114_71137.html
- ▶ Universitätsstadt Tübingen(2025a). “Verpackungssteuer.” <https://www.tuebingen.de/33361/34220.html>